

의안번호	제 55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『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』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 (정 책 기 획 관)
제출연월일	2017년 1월 6일

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」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5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월 6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(정책기획관)

1. 제안이유

- 가.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발굴, 조사연구, 자치역량 강화, 민간교류·협력 및 국가 정책 대응 필요
- 나.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」 관련 제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및 14조
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」 제4조에 따라 “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 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(2017년 ~ 2020년)
- 나. 위 치 : 충청북도 내
- 다. 공간규모 : 센터운영 가능면적(센터장 및 직원 2명 근무)
- 라. 위 탁 비 : 5.1억원 정도(3년간, 인건비 2.7, 운영비 등 2.4)
- 마 수탁기관 :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
- 바. 위탁사무
 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사업
 -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
 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, 협력사업
 -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대응 사업
 - 그 밖의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- 가.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계획 : 붙임
- 나. 관계 법령

<붙임>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센터

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계획



기 획 관 리 실
정 책 기 획 관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계획

- ◇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 · 공포('16. 12. 16) 에 따라
- ◇ 사무의 민간 위탁을 위해 의회 사전 동의 필요
- ◇ 의회 동의 후 센터 설치 및 민간 위탁 추진
※ (근거)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

1 센터 설치 개요

- 설치 근거 :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
- 설치 장소 : 충청북도 내
- 설치 규모 : 센터 운영 가능 면적(센터장 및 직원 2명 근무)
- 설치 방법 : 외부 건물 임차 또는 도 소유 건물 활용
- 편성예산액 : 370백만원
- 기 능
 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사업
 - 도민 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
 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, 협력 사업
 -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
 -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12조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-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지원조례 제 14조

○ 위탁 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대상자 선정

○ 위탁 대상기관 공모 : 도 홈페이지 공고

- 공모대상 : 도내지역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

○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

- 인 원 : 6명(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- 당연직 2명 : 기획관리실장(위원장), 행정국장
 - 위촉직 4명 :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 관계전문가

* 간사 : 정책기획관

- 심의·선정

- 심의사항 :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 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선정방식 : 서면평가 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- 선정 결과 : 도 홈페이지 공고

○ 위탁 예산액 : 연간 170백만원

- 민간위탁 의회 동의(정책복지위원회) : '17. 1월.
- 센터 건물 선정 검토보고 : '17. 2월.
-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 구성 : '17. 2월.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: '17. 3월.
- 센터 건물 임대차 계약 : '17. 3월.
- 센터 내부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: '17. 3월.
- 수탁 운영 대상자 모집 공고 : '17. 3월.
-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: '17. 3월.
-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: '17. 3월.
- 위·수탁 협약 체결(공증) : '17. 3월.
- 민간위탁 운영 : '17. 4월.

(위탁기간 2017. 4. ~ 2020. 3.)

* 센터 설치 장소 결정에 따라 일정 변경 추진

< 참 고 >

□ 관련법

-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조례 제13조, 제14조
 - 도지사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(제13조)
 -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**위탁하여 운영**
 - 위탁기간 3년
 - 위탁기간 연장(재 위탁) 시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재계약
 -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.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조례 제17조
 -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
 -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
 -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
「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
 -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 도모를 위해 「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」 구성